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03. 16. 규칙 제1114호
개정 2015. 12. 31. 규칙 제1405호
개정 2016. 12. 29. 규칙 제1432호
개정 2020. 6. 17. 규칙 제1540호
개정 2025. 5. 7. 규칙 제16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2020 .06.)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2020 .06.)
9.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5조(단장) ① 단장은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한 부서장 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된다.

제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의 명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교육연구지원부, 사업운영지원부, 행정실을 둔다.
② 부에 부장 각 1인, 행정실 실장 1인을 둔다.
③ 부장 및 실장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정부, 산업체 등과의 원활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위하여 센터 및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연구지원부) 교육연구지원부의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관련 직업교육훈련
2. 산학협력 관련 인력양성
3.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
4. 타 교육기관과의 협동 과정 설치・운영
5. 산학협력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제12조(사업운영지원부) 사업운영지원부의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의 지원, 학교기업, 협력연구소 사업의 운영
2.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2020 .06.)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4. 산학협력의 산업자문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사업 운영

제13조(행정실) 행정실의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업무 총괄・조정
2.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3. 산학협력 실적・성과의 평가
4. 운영위원회 운영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운영
6. 산학협력단 소관 기자재・시설・인력 등 관리
7. 청주교육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5.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운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0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교육대학교의 교육 ·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설립당시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제 잉여금중 적립금

제23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4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5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5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이자수입
7.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6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25조의2호 내지 제6호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7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학교기업의 운영비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2020 .06.)
7.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2020 .06.)
8.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9.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8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50,000원 미만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그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에 종료한다.<개정 2015.12.31.>

제32조(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총장은 공인회계사자격을 보유한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7.>

제3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의 감사
2.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 5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청주교육대학교에 귀속된다.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청주교육대학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0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1405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540호, 2020.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60호, 2025.05.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